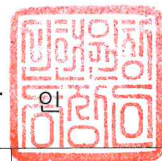
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5월 03일

신현원창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택	김 *택 1984-02-11	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54번길 (신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4-21
김 *조	김 *조 1926-12-26	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11번길 (신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4-21